|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 간소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21호세무행정허가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세무처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 규정 및 국무원 행정심사제도개혁의 심화 요구에 근거하고,<행정허가 표준화지침(2016년판)>을 참조하여, 세무총국은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에 대해간소화 및 최적화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1호)에 첨부된 세무행정허가 서식과 세무행정허가 항목의 분류표를 업데이트한다. 이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문서접수간소화즉시 처리 가능한 세무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행정허가발급 결정서>를 직접 발급 및 송달하며, <세무행정허가 접수통지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각성(省)세무국은 본 성(省) 세무행정허가 사항의 즉시처리범위를 확정한다. 온라인으로 세무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전자영수증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한다.2. 전달대행서비스 제공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과 신청인이 동일한 현(시, 구, 기(旗))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신청 기한 내 주관 세무기관에서 신청자료를 대신 전달 해주는 대행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신청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자료접수명세서를 발급하며, 또한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에 전달한다. 전달대행은 일반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세무기관은 정보화방식을 통해 신청자료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은 전달된 자료를 수취한 후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행정허가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즉시 송달한다. 세무기관은 전달대행사항에 대하여 대장등기를 잘 완성하여야 한다. 전달대행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3. 신청자료 간소화세무행정허가 신청자료가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허가서) 또는 비준문서이거나, 관련 증명서(허가서)및 비준문서의 정보를 정부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의 명칭, 문서번호 및 코드 등 정보만 제공하여 조회검증을 하고, 자료원본 또는 사본은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취급인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 제출요구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증명서원본을 검증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급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캔본을 제공한다. 각성(省)세무국은 실명세무처리를 추진하는 상황과 결합하여, 세무처리 인원의 신분증명 검증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할 수 있다.4. 상담서비스 예약제도입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의 공식사이트, 이메일 또는 모바일세무처리 플랫폼 등 상담서비스 예약 채널을 통해, 세무행정허가사항 관련문제에 대한 상담은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세무기관은 예약사항을 접수한 후, 납세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업무시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5. 문서송달방식 개선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과 신청인이 동일한 현(시,구, 기(旗))에 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접 세무행정허가문서를 송달하는데 기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경우,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은 신청인 주관세무기관에 위탁하여 대리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서면 요구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세무행정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문서발급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명기된 수취일자가 곧 송달일이며,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세무기관은 우편영수증을 보존하고, 대장등기를 잘 완성하여야 한다. 우편송달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조건이 되는 세무기관에서는 세무행정허가 전자문서의 온라인발급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청인이 스스로 다운로드 및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한다.본 공고는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1. 세무행정허가 서식<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462>2. 세무행정허가 항목 분류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463>국가세무총국2017년5월23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简化税务行政许可事项办理程序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21号　　为推进税务行政许可标准化建设，提高办税便利化程度，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等法律法规规定，以及国务院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要求，参照《行政许可标准化指引（2016版）》，税务总局决定对税务行政许可事项办理程序进行简并优化，并将《国家税务总局关于税务行政许可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11号）所附的税务行政许可文书样式和税务行政许可项目分项表更新。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简化受理文书　　对能够当即办理的税务行政许可事项，直接出具和送达《准予税务行政许可决定书》，不再出具《税务行政许可受理通知书》。各省税务局确定本省税务行政许可事项即办范围。网上受理税务行政许可申请的，通过电子回执单等方式予以确认。　　二、提供代办转报服务　　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与申请人不在同一县（市、区、旗）的，申请人可在规定的申请期限内，选择由其主管税务机关代为转报申请材料。主管税务机关在核对申请材料后向申请人出具材料接收清单，并向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转报。代办转报一般应当在5个工作日内完成。有条件的税务机关可以通过信息化手段实现申请资料网上传递。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收到转报材料后，对符合受理条件的，出具并及时送达《税务行政许可受理通知书》。税务机关对代办转报事项应当做好台账登记。代办转报不得收取任何费用。　　三、简化申请材料　　税务行政许可申请材料为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发放的证照或批准文书，或者相关证照、批准文书信息能够通过政府信息共享获取的，申请人只需提供上述材料的名称、文号、编码等信息供查询验证，不再提交材料原件或复印件。取消经办人、代理人身份证件复印件报送要求，改为当场查验证件原件。网上申请的，提供经办人、代理人身份证件原件电子照片或扫描件。各省税务局可以结合推行实名办税情况，进一步简化办税人员身份证件查验程序。　　四、实现咨询服务可预约　　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通过官方网站、电子邮箱或移动办税平台等咨询服务预约渠道，对税务行政许可事项相关问题的咨询实现24小时可预约。税务机关受理预约事项后，与纳税人协商约定在适当的工作时间提供咨询服务。　　五、完善文书送达方式　　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与申请人不在同一县（市、区、旗），或者直接送达税务行政许可文书存在其他困难情形的，税务行政许可实施机关可以委托申请人主管税务机关代为送达，也可以根据申请人书面要求，按照申请人在《税务行政许可申请表》上填写的地址，在文书出具之日起2个工作日内向申请人邮寄送达。邮寄送达的，以挂号函件回执上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并视为已送达。税务机关应当保留邮寄单据并做好台账登记。邮寄送达不得收取任何费用。鼓励有条件的税务机关提供网上出具税务行政许可电子文书服务，方便申请人自行下载打印。　　本公告自2017年7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1.税务行政许可文书样式<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462>　　　　　2.税务行政许可项目分项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463>国家税务总局2017年5月23日　　 　　 |